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강경숙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0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0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0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경숙의원)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7조제1항¹⁾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1호).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호),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제3호).

그러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급의 인원이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2024년 기준 10.1%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현황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15,676	1,610	10.3%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자료: 교육부

현행 「특수교육법」 제12조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제2항).

개정안은 교육감에게도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교육감이 수립·제출하는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학급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개정안과 같이 교육감이 지역 단위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학급 설치 계획이 해당 운영계획에 포함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매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부록으로 첨부되고 해당 운영계획에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수 시도교육청²⁾에서 이미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³⁾하도록 하고 있다는

2) 8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경북, 전남)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행 중임.

3) 광주·전남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부산교육청의 경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나머지 4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지역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수립되던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미 매년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현황을 포함한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별 중장기 특수학교(급) 설립계획도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별도 제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 위임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제출 시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데, 심사 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특수학교 학급 등 설치 기준이 준수되도록 교육감이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운영계획 제출 시기·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특수교육 운영계획 제출 시기·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삭제되도록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를 “교육부장관에게”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생략) <u><신설></u>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u>교육부장관에게</u> -----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 -----.	③ -----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3조제3항에”를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로 한다.

-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생략) <u><신설></u>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과 같음) <u>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u>제13조제3항에</u>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 <u>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u> ----- ----- -----.